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세균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6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보의 범위,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정보 협의체의 구성·운영 방식과 법령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 등의 정의(안 제2조)

- 1) 법령등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을 포함함.
- 2) 법령관련정보에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관한 각종 영향평가 및 정책평가 등의 검토의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 등을 포함함.

3) 법령정보 생산기관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한국법제연구원을 포함함.

나.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의 수립절차(안 제3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거나 시행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다. 법령정보의 수집 방법 및 행정규칙의 직접 등재(안 제4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공보 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이 관보 등을 통하여 수집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직접 등재하여야 하는 법령정보에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을 포함함.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발령 후 10일 이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던 것을 발령 후 지체 없이 등재하도록 하고, 등재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이 등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지

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하도록 함.

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현행 헌법, 법령 외에도 현행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법제처장은 연관법령정보의 상호 연계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발행자의 지정(안 제8조 및 제9조)

1) 법제처장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행법령집을 보급하여야 하고, 법령집의 정확성·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함.

2) 현행법령집 및 추록 제작을 위한 전자시스템 보유 등을 현행법령집의 발행자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08. 12. ~ 0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규정 중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 법 제2조제3호나목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결과

3.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검토의견.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의견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의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

③ 법 제2조제4호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법제연구원

제3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① 법 제4조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소관 법령정보 현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령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 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작성해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 법령정보 관리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2. 소관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주기 및 방식에 관한 자료
3. 소관 법령정보의 국내외 민관 기관과의 공유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공보(특별시·광역시·자치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는 방법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등
2.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관련 정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정보의 효율적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령정보책임관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각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소관 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의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소관 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의 상호 연계 및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등의 실시. 이 경우 법제처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의 외국어 번역·보급 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번역 업무의 총괄·조정

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해외 보급·전수
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보급
8. 국내외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국내외 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에 따른 현행법령집을 보급한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②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집의 정확성 및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의 효율적 발행과 활용을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법령집, 경제관계법령·사회관계법령·행정관계법령 등 법령등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 법령집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 및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현행법령집 및 추록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행자 지정 신청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발행자는 법령집 및 추록의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번역 업무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해외 보급·전수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제처장(법 제11조에 따라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법 제12조에 따라 법제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2. 법 제8조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9조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기술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현행법령집의 보급
5.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번역 업무
6. 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제7조제8호에 따른 국내외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특례) 법제처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을 “기본계획 시행 연

도 2월 28일”로, “10월 30일”은 “3월 15일”로, 같은 조 제3항의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은 “기본계획 시행 연도 3월 31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별표 1]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보유기준

위탁업무	인력 기준	인원
1. 법 제12조제 1항 제1호의 업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업무	가. 사업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령정보 관련 분야(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재분류·가공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령정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업무수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령정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령정보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명 이상
2. 법 제12조제 1항 제2호의 업무	가. 사업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업무수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9명 이상

	2)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1) 또는 2)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업무	가. 사업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어 또는 법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어 또는 법학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번역 관련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어 또는 법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번역 관련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업무수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어 또는 법학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어 또는 법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번역 관련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1) 또는 2)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이상 5명 이상
4.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의 업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라. 해외정보시스템 관련 경험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명 이상

[별표 2]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

1. 공통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기준
가. 시설	1)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2) 업무 관련 자료의 분실, 도난 등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나. 장비	1)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3)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2. 특별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제1호의 공통기준 및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기준
가. 장비	가. 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나. 24시간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출 것

3. 비고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업무 중 둘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6783